

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의 이해

김재호 본회 전문위원

jhkim@klca.or.kr / 2087-7159

I 현물출자제도의 개요

현물출자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물출자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변태설립사항^{*)}으로 회사 설립 당시에 정관에 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이 만일 현금출자만을 인정한다면 금전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출자를 위해 재산을 환가해야 하므로 회사가 설립 후 구입해야 할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환가절차를 거쳐야 하나, 현물출자를 인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이중거래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현금(금전)출자와는 달리 그 출자 재산이 과대평가되는 경우 회사에 현실적 재산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자본충실을 해하여 다른 주주나 채권자를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를 감사인이 평가하거나 감정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의 가액을 감정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현물출자의 공정을 기하고 있다.

현물출자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 매매, 교환 등으

로 보는 학설이 있으나 상법이 정한 출자계약의 형태라고 보는 설이 타당하다.

개정상법은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지 않고 5,000만원 이하의 비중이 작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상법 제299조 제2항 제1호)나 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한 거래소에서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인 경우(상법 제299조 제2항 제2호) 및 주권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등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선임된 감사인에 의한 가액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7조).

이하에서는 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II 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

1. 현물출자의 목적

현물출자의 목적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양도가 가

*)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등 물적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 과대평가되면 주주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를 인정하되 주주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 현물출자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하고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감정을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능하고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산·부동산, 채권(債權)과 어음·債券 등 유가증권은 물론이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무체재산권도 포함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은 물론이고 영업권, 상호권 그리고 계약상의 권리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동산이나 부동산등이 현물출자의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반채권이나 대출채권을 현물출자로 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그러나 노무출자나 신용출자 등 재산적 가치가 불분명하고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것은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현물출자의 주체

현물출자의 주체에 대하여 한 때 이를 발기인으로 한정할 경우가 있었으나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현물출자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현물출자의 방법과 절차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현물출자로서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정관의 정비

현물출자는 동산이나 부동산 또는 채권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가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증자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이에 관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정관에 이를 규정하는 방식은 '○○○주의 범위 내에서 신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또는 '출자전환을 위하여 ○○○ 등 금융기관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 만일 이러한 정관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를 하려면 먼저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발행하려는 주식의 총수가 정관에서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 만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늘려놓아야 한다.

(2) 현물출자계약 체결

현물출자자 소유의 재산을 회사에 출자하는 현물출자의 계약을 체결한다. 현물출자의 여러 형태 중 일반채권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후 금융기관에 출자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전에 이사회 사후 승인을 조건부로 하여 출자전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주금납입에 대하여 대출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를 위한 계약에는 현물출자의 대상과 가액이 확정되어야 하며 자본금총액도 확정되어야 한다.

(3) 이사회 결의

현물출자의 경우도 일반 신주발행의 절차처럼 이사회가 다음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16조).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현물출자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 현물 납입기간)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4) 공시·신고

현물출자도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한 형태이므로 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즉 이사회 결의시에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사유발생 당일까지 이를 공시·신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①2가(1)).

(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상장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주식에 관한 사항과 발행기업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리되어야만 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 사모방식에 해당하므로 1년 동안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제2-1조 ②). 그리고 발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6)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 및 평가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나(상법 제298조 제4항), 공인된 감정인(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299조의2).

즉 회사 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고, 발기인이 받을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및 발기설립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를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동산, 기계장치 등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하고, 채권 등은 공인회계사의 감정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원의 검사인에 의한 조사방법보다는 보다 간편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조사에 갈음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7) 감정평가에 의한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상법 제295조)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9조 제1항). 이 보고서도 회사의 설립등기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다. 그러나 변태설립사항이 발기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거나(상법 제290조 제1호)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또는 발기인의 보수를 정하는 것(상법 제290조 제4항)인 때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법원의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대체할 수 있고 변태설립사항이 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에 관한 것(상법 제290조 제2호·제3호)인 때에는 공인된 공증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상법 제298조 제4항 단서, 제299조의2).

그러나 공증인 및 감정인의 조사로 대체하더라도 법원의 심사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의 보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조사한 후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보고하여야 하고(상법 제299조의2)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무상 법원은 서면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심문기일을 정하여 대표이사 및 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이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상법 제 300조). 여기서 부당하다는 뜻은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 끝나면 감정인은 감정평가서를 발급한다.

(8) 조사·보고의 면제

2011년 개정상법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적은 경우를 열거하고 이를 검사인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i)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대상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000만원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상법시행령 제7조 제1항), ii)현물출자 또는 재산인수의 대상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이고 정관에 기재된 가격이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1주일,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과 효력발생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중 낮은 금액(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인 경우에는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상법 제299조 제2항).

공증인과 감정인의 조사·보고 및 감정(상법 제299 조의 2)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검사인의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현물출자와 재산인수는 감정인의 감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9)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자는 출자목적인 재산을 전부 납입일까지 지체없이 인도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즉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회사에 교부하는 등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295조 제2항, 제305 조 제3항).

출자의 이행이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별로 고유한 권리이전방식에 의하여 재산권을 이전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동산(動産)이면 인도(引渡)하여야 하고 유가증권이라면 배서·교부 등의 방법을 취하고 채권(債權)이면 통지·승낙과 같은 대항요건도 갖춰야 한다. 부동산이나 기타 등기·등록하여야 할 재산은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나 설립 후에는 이를 다시 회사 명의로 등기·등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상법은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 295조 제2항, 제305조 제3항).

납입일까지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현물출자자는 그 권리를 잃으며(상법 제419조 제2항), 이 경우 회사는 현물출자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청약 및 배정(D+22)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는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한 형태이므로 현물출자자는 주식인수의 청약을 위해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 420조, 제302조 제1항). 다만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의 합의와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의 금액이나 시기 등이 결정되므로 별도의 청약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423조 제1항). 따라서 신주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익일에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12) 신주의 발행, 교부 및 상장

현물출자로 인한 신주의 발행, 주권의 교부 및 상장과 관련한 사항은 일반 유상증자의 절차에 따르면 된다. 신주발행절차는 통일규격유가증권 용지에 상법에서 정한 주권의 기재사항을 가쇄하여 거래소에 견양주권을 첨부하여 신주상장을 신청하면 된다(상법 제356조, 통일규격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8조~제9조). 주권 가쇄소로부터 가쇄가 완료된 예비주권을 인수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통보한 신규주권 교부일 이후 주주로부터 교부 청구가 있으면 뒷면에 주주명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신주 교부일 익일에 상장한다(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6조).

㉓ 변경등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되면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 등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425조,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 사본 2부(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2부,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2부, 이사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감정평가서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이다.

첨부서면으로는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 서류,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한 변경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신주발행에 관한 의사록,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다.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1주 내지 4주 등으로 그 기간이 상이하므로 법원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가를 받은 후 등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2주일 정도이다. 등기할 사항은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의 총액 등이며 변경된 취지와 그 연월일이다.

< 현물출자의 진행 절차표 >

NO	진행절차	일정	대상기관	관계법규/비고
1	정관의 정비			상법 제418조 ②
2	현물출자의 계약체결	D	회사, 출자자	이사회결의 후 계약체결도 가능(이사회 승인조 건부)
3	현물출자를 위한 이사회결의	D+1		상법 제416조, 자본시장법 제61조
4	공시·신고	D+1	금융위, 거래소	자본시장법 제19조, 증권발행규정 제2-2조 ②
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D+2	금감원	자본시장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0조
6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D+10		자본시장법 제120조
7	현물출자 재산의 감정·평가	D+13	감사인 / 감정인	상법 제298조 ④, 제299조의2
8	감정평가에 의한 보사 보고 및 법원의 심사	D+20	법원, 감정인	상법 제299조 ①, 제298조 ④, 제299조의2
9	현물출자의 이행	D+21	출자자	상법 제295조 ②, 제305조 ③
10	청약 및 배정	D+22	투자자	상법 제419조, 제420조, 제302조 ①
11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	D+24		상법 제423조 ①
12	주권납입	D+25	납입처	상법 제421조
13	신주 발행 의뢰	D+25	대행사	증권대행업무규정 제52조
14	주권가쇄계약 및 용지 교부신청	D+26	대행사 / 가쇄소	상법 제356조, 통일규격증권취급규정 제4조 및 제8조~제9조
15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	D+27	금융위	자본시장법 제128조, 주권의 발행 및 공시규정 제2-19조
16	변경등기	D+28~33	등기소	상법 제317조
17	신주발행, 교부 및 상장신청	D+34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6조, 신주권 교부일 익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II 실무상 유의사항

1. 정관 정비시 유의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현물출자의 대상

과 가액 및 이로 인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와 종류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정관을 정비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인된 감정인이 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하는 방법보다는 감정인의 감정에 의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2. 가 감정의 실시 검토

감정인 등이 평가한 현물출자의 감정가액은 최소 정관에서 정한 현물출자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무에서는 정관작성 이전에 감정평가사로부터 가 감정을 받은 후 현물출자의 가액과 감정평가액을 일치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 고려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출자비용이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물출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감정결과와 보고 등 기간 고려

감정평가사가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이 보고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서를 다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이 보고서를 확인하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일정은 유동적이다. 빠른 경우에는 5일 전후, 늦은 경우에는 1개월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회사 설립시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중 선택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발기인 3인 이상이 참여하는 설립방법이고, 모집설립은 발기인 3인 이상과 청약인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물출자의 경우 발기설립으로 한다면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변경명령을 하는 등 그 일정에 변경가능성이 크지만 모집설립으로 할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그 변경을 하고 법원은 단순히 감정평가서를 확인하는 기능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집설립의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다.



名士 名言



“여성이 성공하려면 그 누구보다 현명해야 한다!”

- 인드라 누이 / 펩시콜라 CEO -

여성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어느 회사든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불평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나의 역량을 쌓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먼저 반성하여야 한다. 50대 여자 기업인 1위! <포춘>지 선정 연속 5년간 세계 최고 여성 사업가! 인드라 누이, 여자로, 외국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누구보다도 명석해져야 한다고 그녀는 강조한다.